

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제 13 호
------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1998년 8월 19일

발 의 자 : 권국상 의원외 2인

□ 주 문

- 명 칭 :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
- 구 성
 - 인 원 : 11명 (의장 제외)
 - 위 원 : 권국상 의원, 김석기 의원, 김승기 의원, 김영현 의원,
박병만 의원, 박순환 의원, 박한용 의원, 신현문 의원,
이주원 의원, 이한두 의원, 최무영 의원
- 심사기간 : 1998. 8. 25 ~ 8. 26 (2일간)
- 심사대상
 1.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 2.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
 3.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 4.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·운영조례안
 5.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
 6.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 7.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 8. 예산군공설묘지동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 9.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10.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11.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
12.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

□ 제 안 이 유

- 조례의 제·개정과 군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하는 입법과 의결기능은 우리 의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임.
-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금번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부여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칠저를 기하고자 함.

□ 참 고 사 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